



공정거래위원회

보도자료

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

하나 된 열정
하나 된 대한민국



2018년 1월 16일(화) 배포

기업거래정책국 기업거래정책과

2018년 1월 17일(수) 조간부터 보도가능

담당과장: 송정원 (044-200-4583)

방송 · 인터넷 매체는 1월 16일(화) 낮 12시

담당: 장영신 서기관 (044-200-4584)

담당: 안광현 사무관 (044-200-4587)

하도급업체들, 최저임금 상승 부담 원사업자와 나눌 수 있어

- 공정위, 하도급법 및 표준하도급계약서에 관련 내용 반영 -

※ 엠바고 주의 ※
방송 · 인터넷 매체는 1월 16일(화)
낮 12시부터 가능합니다.

■ 16일 공포된 개정 하도급법에는 **최저임금 상승** 등으로 공급원가가 증가하는 경우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증액해 달라고 **요청할 수 있는 권리**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었다.

○ 개정 하도급법에는 이외에도 원사업자의 **전속거래 강요행위**, **원가 등 경영정보 요구행위** 등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.

■ 또한, 공정위가 이번에 개선한 표준하도급계약서에는 **최저임금 상승**으로 원사업자가 **원도급금액을 증액**받은 경우 그 **비율만큼 하도급 금액도 증액**해 주도록 하는 내용이 반영되었다.

| |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정(1개) | 철근가공업 |
| 개정(8개) | ①건축물유지관리업 ②건축설계업 ③디지털 디자인업 ④제품·시각·포장 디자인업 ⑤환경 디자인업 ⑥TV·라디오 등 제작 분야 광고업 ⑦전시·행사·이벤트 분야 광고업 ⑧엔지니어링업 |

○ 이번에 개선된 표준하도급계약서에는 **부당특약을 통한 비용전가 금지** 규정 등 하도급업체의 **권익 증진**을 위한 규정이 많이 포함되었다.

■ 이번에 개선된 하도급법,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원사업자와 하도급업체 간에 **비용 부담이 합리적**으로 이루어지게 하고,

○ 특히, 금년 들어 **최저임금 상승**으로 하도급업체의 **부담 증가**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그 부담을 **완화**시켜 주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.

1

개선된 주요 내용

가. 최저임금 상승 등에 따른 하도급업체의 부담 완화

- ① 16일 공포된 개정 하도급법에는 계약 기간 중에 최저임금, 공공요금 상승 등으로 인해 공급원가가 증가하는 경우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증액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었다. (법 §3조, §16조의2)
 - 앞으로 하도급업체는 이 규정을 통해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경우 원사업자에게 대금을 증액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되었으며, 하도급업체로부터 대금 조정 요청을 받은 원사업자는 10일 이내에 반드시 협의를 개시해야 한다.
- ② 또한, 공정위는 이번에 9개 업종을 대상으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·개정(제정 1, 개정 8)하여 최저임금 상승 등에 따라 증가되는 각종 비용에 대해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하였다.
 -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원사업자에 비해 힘이 약한 하도급업체의 권익 보호를 위해 양자 간의 거래 조건이 균형있게 설정될 수 있도록 공정위가 보급한 계약서이다.

< 표준하도급계약서 주요 제·개정 내용 >

- ① 최저임금 상승으로 원도급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하도급금액 증액 의무화
 - 계약 기간 중 최저임금 상승 등과 같은 경제상황 변동으로 인해 원도급금액이 증액되는 경우, 원사업자는 하도급업체의 요청이 없더라도 그 증액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금액을 반드시 증액해 주도록 규정하였다.

- ② **작업도구, 비품 등의 가격 변동을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요건에 포함**
 - 하도급업체가 계약 이행 과정에서 사용하는 작업도구, 비품 등의 가격이 변동된 경우,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증액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새로이 부여되었고, 조정 요청을 받은 원사업자는 10일 이내에 하도급업체와 협의를 개시하도록 규정하였다.
- ③ **부당특약에 따라 부담한 하도급업체 비용 보전에 관한 규정 신설**
 - 원사업자가 설정한 부당특약으로 인해 하도급업체가 비용*을 부담한 경우, 하도급업체는 해당 비용을 원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다.
 - *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·산업재해에 소요된 비용 등
- ④ **비용부담 주체가 불분명하여 하도급업체에게 전가할 우려가 큰 비용을 원사업자가 부담토록 명시적으로 규정 (철근가공 업종)**
 - 원사업자의 긴급발주에 따른 추가발생 비용, 당초 계약에 없는 철근 받침대* 제작 비용, 공사현장 상황으로 인해 철근의 하차가 지연되는 경우 발생하는 현장대기료 등의 비용을 원사업자가 부담토록 명시하였다.
 - * 콘크리트 타설 작업시 콘크리트가 골고루 들어갈 수 있도록 철근이 지면으로부터 일정 간격으로 띄워지도록 하는 건축자재

< 표준하도급계약서 실효성 확보 수단 >

- **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는 원사업자는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에서 최대 8점(중견기업 8점, 건설업종 대기업 7점, 제조·용역업종 대기업 6점)의 점수를 받을 수 있다.**
 -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 결과는 최우수(95점 이상), 우수(90점 이상), 양호(85점 이상) 등으로 등급화 되는데, 각 등급 간 점수 차이(5점)보다 **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에 부여된 배점(6~8점)이 크므로,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가 원사업자의 등급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.**
 - 한편,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에서 ‘최우수’ 등급을 부여받은 업체는 하도급법 위반 여부에 관한 공정위의 직권조사를 2년간 면제받고, ‘우수’ 등급의 경우는 1년간 면제받는다.

- 또한, 공정위는 금년 1분기 중에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기준을 개정하여 납품단가를 많이 조정해 준 원사업자는 최대 5점까지 점수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.

〈 하도급업체의 피해구제 절차 〉

- 이번에 개선된 표준하도급계약서가 사용된 거래에서 원사업자가 최저임금 상승을 이유로 원도급금액을 증액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금액을 증액해 주지 않거나,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하도급업체에 전가하는 경우
 - 하도급업체는 계약위반을 이유로 원사업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, 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.

나. 하도급업체의 권익 증진을 위한 여타의 내용

① 16일 공포된 개정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업체에 대해 자신과만 거래하도록 억압하는 행위(전속거래 강요행위*), 원가 등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및 기술수출을 제한하는 행위를 별도의 위법행위로 명시하여 금지하였고, (§18조 ②항)

* (예시) 대기업이 자신의 이득을 위해 협력사에 대해 거래단절·물량축소 등 불이익을 제공할 것을 거래조건으로 내걸면서 자기와만 거래하도록 하는 행위

- 법위반 행위로 피해를 당한 하도급업체가 공정위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원사업자가 거래 단절 등을 통해 보복하는 행위도 새로운 위법행위로 명시하였으며, 원사업자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보복행위도 3배소 적용 대상으로 추가하였다. (§12조의5, §35조)

* 현행 3배소 적용 대상: 기술유용, 부당 대금 결정·감액, 부당 위탁 취소, 부당 반품

② 이번에 개선된 표준하도급계약서는 건축설계업·디자인업·광고업 등 용역업종에서 제작된 창작물에 대해 원사업자는 자신이 기여한 비율만큼만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다.

* 기존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제작물 창작이 전적으로 하도급업체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소유권을 원사업자와 하도급업체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음

- 디자인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는 목적물의 멸실·훼손이 원사업자가 목적물 수령을 부당하게 거부·지체하고 있는 기간 중에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은 원사업자가 부담하고,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전부를 지급하도록 규정하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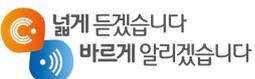
※ 이번에 개선된 9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 전문은 공정위 홈페이지(www.ftc.go.kr) (해당 메뉴: 정보공개-표준계약서-표준하도급계약서)에 수록되어 있음

2 기대 효과

- 이번에 개선된 하도급법,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원사업자와 하도급 업체 간에 비용 분담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게 하고,
 - 특히, 금년 들어 최저임금 상승으로 하도급업체의 부담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그 부담을 완화시켜 주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.

3 향후 계획

- 공정위는 이번에 제·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가 보다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대한상의·중기중앙회 등과 협조하여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, 사업자들에게 표준하도급계약서의 내용 및 향후 공정위의 공정거래 협약 이행 평가 방향 등에 관해 적극 알릴 계획이다.
- 아울러, 공정위는 2차 협력사 이하 단계에서의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, 공정거래협약 체결, 거래조건 개선이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대기업이 자신의 거래상대방인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독려하는 행위는 하도급법상의 ‘부당한 경영간섭’으로 제재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1분기 중에 관련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.

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 | <p>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www.ftc.go.kr</p> |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